

『 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7년 5월 22일

나. 발 의 자

박교상 의원, 한정우 의원, 장세만 의원, 임춘구 의원,
김도문 의원, 김영호 의원, 박순이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5월 25일

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교상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토대로 「구미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」가 제정되었으나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이 폐지 되고 「주택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·정비 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「주택법」으로 개정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)
- “한국주택은행”을 “국민은행”으로 명칭 변경(안 제4조, 제5조, 제7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주택법」 및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나 명 철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토대로 「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」가 제정 되었으나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이 2003년 5월 29일 「주택법」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보완 정비하려는 안으로서
- 「주택건설촉진법」을 「주택법」으로 변경하고, “한국주택은행”을 은행 통합으로 변경된 명칭인 “국민은행”으로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